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9.3.11(월) 조간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강 영 수(02-2100-2660)	담 당 자	민 인 영 사무관 (02-2100-2661)	
	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이 경 식(02-3145-6700)		황 선 오 팀 장 (02-3145-6710)	

제 목 :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("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")

- 공모펀드, 투자일임, 신탁 등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위하여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50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
- ① 기존의 투자자 보호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
 - ② 유사분야기능 간 형평성, 규제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
 - ③ 자산운용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
 - ④ 불명확한 규제를 명확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

1. 추진 배경

- 자산운용산업은 기업에 모험자본 등을 공급하는 한편, 투자자에게는 투자수익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을 지원
- 최근 10년간 국내 자산운용산업은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크게 성장하여 왔으며, '16년 이후 수탁고(펀드+일임)가 1,000조원을 상회
 - 특히, 고령화·저성장 시대에서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산운용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

□ 그러나, '15.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*' 이후 사모펀드 시장이 성장을 주도하고 공모펀드 시장은 정체되는 모습

*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사모펀드 체계를 경영참여형 및 전문투자형 2개로 단순화, 운용사 진입형태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 등

□ 그간 공모펀드 등 자산운용시장에 대해 '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('17.12월)'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

○ 그러나, 여전히 공모펀드 등의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

※ 최근 공모펀드 등 자산운용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주요내용

- ① (공모펀드 활성화방안, '16.4월) 펀드 판매채널 확대, 비교공시시스템 도입, 성과보수체계 활성화, 클린클래스 도입 등
- ② (펀드상품 혁신방안, '16.5월) 사모투자 재간접펀드·액티브 ETF·실물투자 재간접펀드 등 새로운 펀드 상품 도입
- ③ (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, '17.12월) 판매사·운용사 성과 공개, 실질수익률·환매예상금액 월별통지 등

□ 이에, 금융당국은 현장소통반, 옴부즈만, 업계 간담회* 등을 통해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,

* '18.3월부터 자산운용시장의 업권·투자분야별(예: 실물투자)로 금융위·금감원 각각 10여회(총 20여회) 업계 간담회 실시 등

○ 또한,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 청취하여온 바 있음

*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('19.1.15) 등

⇒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공모펀드, 투자일임, 신탁 등 자산운용 산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

○ 특히, 자산운용시장 현장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세부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 추진

2. 현장의 주요 지적 사례

① 투자자 보호 규제가 투자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

- 공모펀드는 전문성이 미흡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
- 그러나, 투자자 보호 규제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개선 필요
 - * (예)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이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제약, 투자일임·신탁계약 투자자는 매분기 투자성향 분석을 위해 직접 회신하여야 해 불편

② 유사분야·기능과의 형평성, 규제취지 등을 감안시 과도한 규제

- 유사분야·기능과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규제의 도입취지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한 경우 규제를 완화할 필요
 - * (예) 투자일임 등은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는데도 신탁은 비대면 계약 제한,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방법별로 조달한도를 제한하여 과도한 측면

③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

- 자산운용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이 강화되고,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
 - * (예) 집합투자업자 등의 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없는 집합투자업자 변경 발생, 기준가격 산정 오류 증가로 인해 펀드 산업 신뢰 저하 우려

④ 규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키는 규제

-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시장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명확화할 필요
 - * (예) 펀드 판매사가 자문업을 겸영시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지 불명확

3. 주요 개선내용

1 투자자 이익 제고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

① **(현행)** 이해상충 방지, 분산투자, 사모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까지 투자자의 자산운용 선택을 제한

⇒ **(개선)**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자산운용에 자율성을 부여

< 주요 개선사항 >

현 행	개 선
·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500만원 이상 투자 필요	·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
· 동일한 투자일임업자가 운용중인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가 제한	·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 자신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를 허용
· 공모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 지분의 20%까지만 취득 가능	· 공모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를 50%까지 상향

② **(현행)**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, 투자자에 대한 통지, 운용 보고서의 교부 등의 경우 일부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

⇒ **(개선)**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

< 주요 개선사항 >

현 행	개 선
· 투자일임·신탁 계약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위해 투자자가 매분기 금융회사에 직접 회신 필요	· 투자성향 분석주기를 연 1회로 완화
·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전략 등을 잘 알고 있는 경우(동일 펀드 재가입 등) 까지 판매사는 설명의무 이행 필요	· 전액 환매 후 재가입 또는 동일 펀드 내 다른 클래스(판매보수·수수료만 다른 펀드) 매입시 설명의무 배제
·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이 서면, 전자우편으로 제한	·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을 문자 메시지, 스마트폰 앱 등으로 다양화

2 형평성 및 규제 취지 등을 감안시 과도한 규제 개선

① **(현행)** 비대면 계약,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 범위 등에 있어 유사한 분야·기능과 비교시 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거나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 존재

⇒ **(개선)** 유사한 분야·기능간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

< 주요 개선사항 >

현 행	개 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일임의 경우 영상통화로 설명의무 이행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허용하나 신탁의 경우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상통화로 설명의무 이행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허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농·수협, 신탁 등 상호금융기관이 포함되나, 새마을금고는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전신탁재산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기금,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도 위임가능하나, 유사한 성격의 우정사업본부는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을 허용

② **(현행)** 부동산신탁의 차입규제, 펀드정보 공유제한 등의 경우 규제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고 있으나, 규제수준이 일부 과도

⇒ **(개선)** 규제의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

< 주요 개선사항 >

현 행	개 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시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은 사업비의 15%이내,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은 사업비의 70% 이내로 각각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동산 개발신탁 사업비의 조달 한도를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모두 합산하여 사업비의 100% 이내로 규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는 펀드 판매사에만 1개월 경과한 정보를 공유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 공유 대상에 계열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고, 정보의 범위도 5영업일 경과한 정보로 확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정족수*가 과도하게 높아 결의에 어려움 존재 <p>* 출석수익자 과반수 + 발행수익증권의 1/8 (법정사항) . 1/10 (신탁계약 사항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되, 결의를 위한 출석수익자의결권 행사비율은 강화 <p>* 출석수익자 2/3 이상 + 발행수익증권의 1/16 (법정사항) . 1/20 (신탁계약사항)</p>

3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산운용시장의 건전성 강화

① (현행) 집합투자업자, 부동산신탁업자 등이 부실화될 경우 사전에 이를 관리하거나 적기에 퇴출하는 데 한계 존재

⇒ (개선)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화된 경우 시장에서 적기퇴출되도록 규제 개선

< 주요 개선사항 >

현행	개선
·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의 경우 등록유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퇴출에 한계	·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 대한 제재수준을 등록최소로 일원화
· 부동산신탁업자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져 대손충당금 적립이 불충분	·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을 분양 후 경과기간과 분양률에 따라 분류하도록 객관적인 기준 마련

② (현행) 기존 관행이 지속되거나 규제가 미비함에 따라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 존재

⇒ (개선)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

< 주요 개선사항 >

현행	개선
·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	·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의 변경시 변경사유, 절차, 손실보상, 손해배상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
· 펀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 지연되며, 기준가격 산정도 과도하게 지연(23시경)	· 해외자산의 경우 익영업일(T+1일) 기준가격에 반영하고, 국내자산의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시간을 규율
· MMF 기준가격을 장부가로 평가함에 따라 선환매이득이 존재하여 대량환매요청 발생 가능	·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도입
· 펀드·투자일임·신탁재산 운용시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'19.10월 일몰도래 예정	·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상시화

4 불명확한 규제에 명확화

□ (현행) 규제가 불명확하여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례 존재

⇒ (개선) 불명확한 규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

< 주요 개선사항 >

현행	개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펀드 판매사가 성과에 연동하여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불명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투자자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명확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존속기간이 도래한 사모 실물펀드 등을 공모펀드로 전환하는 것이 법상은 가능하나, 구체적인 절차·기준이 부재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모 실물펀드를 공모펀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·기준을 마련 * 실물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 방법, 적정 공모가격 산정방법 등

4. 향후 일정

□ 자본시장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'19.3월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

* (법 개정사항) 9개 과제, (시행령 개정사항) 18개 과제,
(시행규칙 개정사항) 1개 과제, (금투업규정 등 개정사항) 22개 과제

□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

※ **첨부: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(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)**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